#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3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 · 임미애 · 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박 정

전재수 • 전용기 • 김남희

이학영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 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6391 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노동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 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 노동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각각 "건설노동자공제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제1항·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일용근로자"를 "건설일용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근로 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본문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각각 "건설노동자공제회"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노동자의 노동이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근로일수"를 "노동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노동일수(勞動日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근로일수"를 각각 "노동일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근로일수"를 "노동일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근로일수"를 "노동일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1호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한 법률	<u>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건설근로자</u>	제1조(목적) <u>건설노동자</u> -
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	
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u>건</u>	건설노
<u>설근로자</u> 에게 퇴직공제금을 지	<u>동자</u>
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	
함으로써 <u>건설근로자</u> 의 고용개	<u>건설노동자</u>
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	
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u>근로자</u>	1 <u>노동</u>
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u>자</u>
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	
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	
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	
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	2 <u>건설노동자</u> <u>「노동기</u>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u> 준법_</u> 노동자-
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3. 4. (생략)
-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략)
-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

3. • 4. (현행과 같음)
5
<u>건설노동자</u>
<u>건설노동자공제회</u> -
건설노
<u>동자공제회</u>
제3조( <u>건설노동자</u> 고용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u>건설노동자</u>
건설노동
자
<u>건설노동자</u>
②
1. (현행과 같음)
2. <u>건설노동자</u>
3. <u>건설노동자</u>

에 관한 사항

-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u>건설</u> <u>근로자</u>의 직업능력 개발·향 상에 관한 사항
- 5. <u>건설근로자</u>의 복지증진에 관 한 사항
- 6. 임금·휴일·휴가 및 <u>근로시</u>
  <u>간</u> 등 건설업의 <u>「근로기준</u>
  <u>법」</u> 준수에 관한 사항
- 7. 동절기 <u>건설근로자</u> 고용안정 에 관한 사항
- 8.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 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 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 4. (생 략)

제2장 <u>건설근로자</u>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
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4	H설
<u>노동자</u>	
5. <u>건설노동자</u>	
6 <u>노동</u> 시	<u>]간</u>
<u></u> 「노동기준법	]
7 <u>건설노동자</u>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권고)	
<u>건설노동자</u>	
1. ~ 4. (현행과 같음)	
제2장 <u>건설노동자</u> 의 고용개선	<u> </u>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에게	신고하	구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형령으로	르 정히	는 일	]정 규
모 이	하의 /	사업장의	의 경우	구 그러
하지	아니하	다.		

- 1. <u>건설근로자</u>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2. <u>건설근로자</u>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u>건설근로자</u>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4. 5. (생략)
- 6. 그 밖에 <u>건설근로자</u>의 고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지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

,
1. <u>건설노동자</u>
2. 건설노동자
3. 건설노동자
4.・5. (현행과 같음)
6건설노동자
②
②
건설노동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데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u>건설노동자</u>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u>건설근</u> 로<u>자</u>에게 내주어야 한다. 1. · 2. (생 략) 3. <u>근로시간</u>, 임금 및 고용기간 4. · 5. (생 략)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 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 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 1. ~ 1의3. (생략)
-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 3. <u>건설근로자</u>의 고용개선 프로 그램 시행
- 4. (생략)
- 5. 그 밖에 <u>건설근로자</u>의 고용 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 ⑤ (생 략)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 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

	_
<u>건</u> 성	宣_
노동자	
 1.·2. (현행과 같음)	
3. 노동시간	_
 4.·5.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	-)
①	_
<u> </u>	_
고 서 1 도 기	_
건설노동자	_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2. <u>건설노동자</u>	_
3. <u>건설노동자</u>	_
4. (현행과 같음)	
5 <u>건설노동자</u>	_
	_
② ~ ⑤ (현행과 같음)	
6	_
·	_
	_
건설일용노동자	_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 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

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

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

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려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 급인에게 <u>건설근로자</u>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 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 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 <u>건설근로자</u>에게 지급 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세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u>건설노동자</u>
2
건설노동자
<u>건설노동자</u>
<del></del> .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 잔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건설근 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3)	
건설노동자-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건설노동자의	
별 구분 등) ①	
<u>건설노동자</u>	
2	- <u>건설노동</u>
<u> 자</u>	
	 - <u>건설노동</u>
<u> 자</u>	<u></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
<u>자</u> 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
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u>건설근로자</u> 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
(제7조의5에 따른 <u>건설근로자</u>
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
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건설근로자</u>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 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③건설노동
<u>자</u>
<u>건설노동자</u>
<u>건설노동자</u>
4
건설노동자
-, -)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u>건설노동</u>
<u>자</u>
건설노동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 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 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 1. ~ 5. (생 략)
  - 6. <u>건설근로자</u>에 대한 복지시설 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u>건설노동자</u>
건설노동자-
 게Oフ/기서 : 도기고게취이 : 서리
제9조( <u>건설노동자공제회</u> 의 설립 등) ①
<ul><li>♂) ①</li></ul>
고 서 1 . 도 기
건설노동자 고계칭
<u>공제회</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1. ~ 5. (현행과 같음)
6. <u>건설노동자</u>
<u> </u>

사업

6의2. <u>건설근로자</u>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7. · 8.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한다.
- 1. ~ 5. (생략)
- ④ (생 략)
-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 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무하는 <u>건설근로자</u>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6의2. <u>건설노동자</u>
<ul><li>7. · 8. (현행과 같음)</li><li>② (현행과 같음)</li></ul>
③
,
<ol> <li>1. ~ 5. (현행과 같음)</li> <li>④ (현행과 같음)</li> </ol>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건설노동자
<u>노동자의 노동이력</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건설노동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 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생략)
- 제13조(피공제자의 <u>근로일수</u> 신 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u>근로일수(勤</u> 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 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 ② (생략)
  -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u>근로일수</u>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 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 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 게 알려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 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1. <u>노동시간</u>
2. (현행과 같음) 제13조(피공제자의 <u>노동일수</u> 신 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u>노동일수(勞動</u> 日 <u>數)</u>
<u>노동일수</u>
 <b>4</b>

는 피공제자의 <u>근로일수</u>를 신 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7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u>근로</u> 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1. ~ 6. (생략)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 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u>근로한</u>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 업주에게 고용되어 <u>근로한</u> 경 우에는 각각의 <u>근로일수</u>를 합 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

<u> </u>	
	_
5 (현행과 같음)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
(현행과 같음)	
2	-
<u>노동</u>	-
<u>자</u>	_
	_
	_
	_
	_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_
	_
노동한	_
<u></u>	_
<u>.</u>	
•	
, 도위	_
<u>노동한</u>	
<u>노동일수</u>	-
	-

부 월수를 계산한다.

#### ⑤ (생략)

-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

##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게 알려야 한다.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 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

<u>건설노동자</u>
건설노동자
③ <u>건설노동자</u>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
노동일 <u>수</u>